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02년 5월 15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4월 12일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나. 회부일자 : 2002년 5월 14일 회부
다. 상정일자 : 2002년 5월 14일 제9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2년 5월 14일)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자치행정과장 신영선)

가. 제안이유

○ 행정기관의 『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』를 뒷바침하기 위해
-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(토요일 휴무제 도입)

○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서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호소
- 일반 휴식자의 연간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연가공제 방법개선(연가수혜범위 확대)

나. 주요골자

○ 군수는 필요한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함(안 제16조의2제1항)
○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있어 현행 『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』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『휴직일수를 원할로 환산하여 공제』토록 함
○ 국민의료보험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.(안 제2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○ 본 조례는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.

○ 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바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휴직을 했으나 복직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며

아울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입법형식등 법체계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